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4. 23 선고 2021가합10235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원경, 이지아, 소재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6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1. C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4. 19. 체결된 대물변제계약 및 매매계약을 241,300,3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7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161,520,785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 및 같은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

가지는 79,779,54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C에게 각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: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각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3. 일부 기각 부분

원고는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61,520,785원, 같은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79,779,542원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당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.

그러나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전혀 배당받은 금액이 없고(2024. 1. 18. 참고자료로 제출된 배당표), 달리 현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재판장 판사 유아람, 판사 이영곤, 판사 이두현

별지